

제341회 정례회
2015. 7. 14.(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7. 14.(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6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7월 3일

-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조운희)

1. 제안사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권한 환원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3건

- 위임(도지사→소방서장) ⇒ 권한 환원(도지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15.7.1.)

- ▷ 소방시설업 등록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근거법령 이관·위임권한 환원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3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임(도지사→소방서장) ⇒ 권한 환원(도지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7.1.)

- ▷ 방염처리업 등록
- ▷ 방염처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 방염처리업자의 지위승계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임했던 '소방시설업' 관련 위임사무 3건과 '방염처리업' 관련 위임사무 3건을 도지사에게로 권한을 환원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
----------	-----

제출연월일 : 2015년 6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권한 환원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3건
 - 위임(도지사→소방서장) ⇒ 권한 환원(도지사)
 -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15.7.1.)
 - ▷ 소방시설업 등록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근거법령 이관·위임권한 환원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3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임(도지사→소방서장) ⇒ 권한 환원(도지사)
 -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7.1.)
 - ▷ 방염처리업 등록
 - ▷ 방염처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 방염처리업자의 지위승계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대응구조 구급과	1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허가 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용도폐지 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및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신고의 수리 라. 예방규정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명령 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 사용 정지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 같은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2조
	2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나. 과징금 처분 다. 등록취소 청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32조
	3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나.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4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마. 과징금 처분 바. 등록취소 청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44조제2호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같은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16조제5항

관련법령 발췌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대응구조구급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8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 5. (생략)

② (생략)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6. (생략)

② (생략)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삭제